

연금시장리뷰 39호

퇴직연금 공공교육의 외국사례와 우리나라의 시사점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043-840-3464, wonshik@kku.ac.kr)

□ 퇴직연금 교육의 외국사례와 우리나라의 시사점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고용주들에게 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9조 제 1항) 그러나 연금교육의 내용은 매우 형식적이다. 노동부는 특정기관에 위탁하여 퇴직연금 관리자나 퇴직연금 사업자 직원을 중심으로 집중교육을 하고 있으나 일반 대중을 위한 제도 및 투자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2011년 현재 퇴직연금교육은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에서 퇴직연금의 기본 내용과 도입 실무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 교육에 대한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근로자 중심의 교육은 아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확정기여형의 경우 기금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기금운용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기금운용의 수익률이 낮을 경우 혹은 기금투자에 실패하여 손실이 날 경우 이는 가입자의 노후생활 불안정을 의미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국민에 대한 퇴직연금 및 금융교육이 매우 필요하고 특히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공부분, 특히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호주는 2005년 근로자들의 기업연금 선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2년간 약 2천만달러를 할당하였음. 교육홍보는 금융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의 활동을 포함하였다. 첫째, 기금의 선택을 위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콜센터, Super Choice Internet site로서 www.superchoice.com.au 설립, 고용주와 근로자들을 위한 기업연금 책임 및 권리에 관련된 책자의 발간, 이에 관련된 광고 등이다. 뉴질랜드는 자발적 퇴직연금인 KiwiSave의 확산을 위하여 국민들의 금융지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인 캠페인과 금융교육홍보를 하고 있다. 미국은 1995년에 미국 노동성은 퇴직안정을 위한 개인적 책임의 필요성을 근로자들이 인식하도록하기 위하여 정부연금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1996년에 노동성은 Interpretive Bulletin 96-1을 발행하면서 더 강력히 금융교육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공공정보홍보 프로그램인 Choose to Save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교육은 앞으로 다음의 사항 등에 보다 깊은 관심으로 공공교육을 이끌어야 한다. 첫째, 기존사원 대상의 경우 투자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흥미를 갖게 할 것인가? 둘째, 계속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셋째, 획일적 프로그램에 대한 집합교육은 비용과 효과의 관점에서 사원과 기업에 있어 유익한 것인가? 넷째, 투자교육의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운영관리기관에 의뢰하는 비중도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의견교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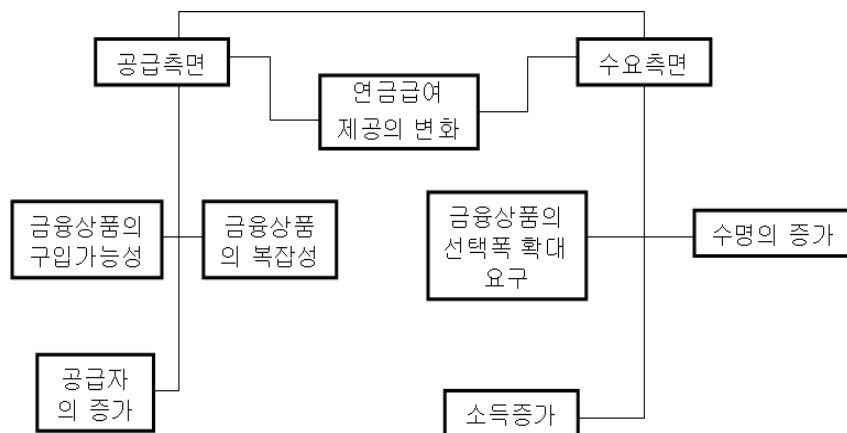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고용주들에게 1 년에 1 회이상 퇴직연금교육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9 조 제 1 항)
- 그러나 연금교육의 내용은 매우 형식적임. 노동부는 특정기관에 위탁하여 퇴직연금 관리자나 퇴직연금 사업자 직원을 중심으로 집중교육을 하고 있으나 일반 대중을 위한 제도 및 투자교육은 하지 않고 있음
 - 2011 년 현재 퇴직연금교육은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에서 퇴직연금의 기본 내용과 도입 실무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 교육에 대한 내용임
 - 연금교육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연금교육에 대한 서베이나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있음
-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확정기여형의 경우 기금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기금운용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함
 - 기금운용의 수익율이 낮을 경우 혹은 기금투자에 실패하여 손실이 날 경우 이는 가입자의 노후생활 불안정을 의미함
- 따라서 전체 국민에 대한 퇴직연금 및 금융교육이 매우 필요하고 특히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공부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기업연금)을 도입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금융교육을 통하여 합리적인 자금관리를 유도하고 있음. 특히 공공성격의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홍보의 공급자들은 공공, 준공공, 민간 혹은 독립 비영리 기관들이며 규제 감독기구, 정부 산하기관, 소비자단체 등도 포함됨
- 이들은 또한 책자, 웹사이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국가별 금융교육의 내용 및 특징, 정보제공 수단 등을 퇴직연금을 기도입한 선진외국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¹ 김원식, 신문식 (2008.1),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방안』,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의 일부 내용에 기초하여 수정 보완함.

II. 연금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가입자 교육임
- 제도 도입을 위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종업원)에게 단기간에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포함한 투자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 전달시키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가입자의 소송리스크 발생 등 사후적인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도입된 취지중의 하나인 퇴직급여 채무라는 재무상의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시간적인 문제는 존재하겠지만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확정기여형 연금을 도입할 것으로 판단됨
- 확정기여연금이라는 제도의 본질의 하나가 "가입자의 자기책임에 의한 운용"이라는 점에서 운용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됨
 - 이에 확정기여연금의 도입 및 운영의 성패는 가입자교육이 그 관건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퇴직연금교육의 수요는 금융 산업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임. 즉, 현재는 금융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더라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금융무지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퇴직연금 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가입 근로자를 금융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및 수단, 가입 근로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의 내용 등에 대한 파악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음
- 금융교육의 특성에 따른 금융교육의 공급 및 수요 유발요인으로서 이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공급부문에서는 금융상품의 구입가능성, 복잡성, 그리고 공급자의 증가를 들 수 있고, 수요측면에서는 소득, 평균수명, 그리고 더 많은 선택을 원하는 개인들의 증가를 들 수 있음

<그림> 금융교육의 수요유발 요인들



출처: Robert Holzman and M. Pallares-Miralles, "The Role, Limits of, Alternatives to Financial Education in Support of Retirement Saving in the OECD, Easter Europe and beyond," World Bank, 2007.

○ 공급측면의 요소

- 첫째, 금융상품의 구입가능성은 과거에 단순히 현금으로 구입이 가능하던 것이 이제는 수표, 신용카드, 현금카드, 소비자신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해 졌음
 - 저축수단에 있어서도 많은 국민들이 단순히 은행저축에서 다양한 실적형 저축상품이나 뮤추얼펀드와 같은 안정성에 기초한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음
- 둘째, 금융상품의 복잡성에 있어서는 금융상품의 숫자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금융상품의 설계와 수수료 구조에 있어서도 매우 복잡해졌음. 오랜 기간 동안 연금상품의 기본적 구조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지만 개인의 선택은 다양하게 변화해 왔음
 - 예를 들면 연금액이 실질/명목가치형인지 수익율이 고정 혹은 변동 금리형인지, 상환기간이 고정되어 있는지 생애보장형인지 등임
 - 또한,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상품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많은 금융 상품도 구입이 가능함
- 셋째, 금융 상품의 공급자들이 최근 들어 많이 증가해 왔음. 뮤추얼펀드 사업자, 연금만 전문적인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은행 등 매우 다양함

○ 수요측면의 요소

- 첫째, 저소득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의 소득 증가에 따라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향후의 소비를 미래에 분산시키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수요함
 - 고소득자들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선호를 증가시킴. 금융상품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더 비례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사치재임
- 둘째, 평균수명의 증가는 근로기간에는 저축을 할 수 있는 금융수단의 수요를 증가시킴. 그리고 건강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수요도 증가시켜 왔음
- 셋째,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의 개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들은 금융시장 상품의 선택을 증가시키기를 원함. 이러한 욕구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자들이 더 사회의 경제력 계층화를 원하는 것과 관련됨
- 연금제도가 정부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이전되어 감에 따라 개인들의 생애기간 동안 기금의 증식과 기금의 사용 단계에 필요한 금융상품의 필요성 및 보다 낫은 결정을 내리는데 금융지식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해 왔음

- 투자교육을 실행해서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 적용해야 함
 - 일반적으로 투자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혹은 정부가 참여하여 실무 중심으로 교육 혹은 컨설팅과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 그리고 그 책임은 거의 투자자가 짐

○ **교육방향의 설정에 있어서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금융교육에 대한 평가부분임. 투자교육을 제공받는 근로자는 물론 이를 제공하는 후원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함**

- 첫째, 근로자측면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baseline)가 있어야 함
 - 근로자들은 인구학적 구분(연령, 근속기간, 성별, 소득, 교육 등), 직업(업종, 지역, 기능, 급여수준), 금융지식(기본적인 금융지식,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 투자 상식, 퇴직신뢰도), 교육스타일(자습 대 강사교육, 집단교육 대 개인교육, 오프라인 대 온라인, 문장 대 그림)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둘째, 퇴직연금의 후원자측면에서는 금융교육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봄
 - 특히 투자교육제공자인 ICC Plan Solutions 는 일반적으로 연금 후원자들은 그들의 현재 근로자 금융교육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입자들이 기본적인 투자지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함

III. 선진 각국의 공공(정부)금융교육의 사례

- 가입자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확정기여연금과 같이「가입자 자신이 구좌자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업주 등의 수탁자는 그 운용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면책 방식은 중대한 책임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음
- 미국의 경우 1992 년의 노동성규칙에서 이러한 의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가입자 자신이 계좌자산에 대한 운용 권한을 가지는 경우」의「가입자에 의한 운용」이란 무엇인가를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① 위험과 수익의 특성이 상이한 운용상품을 3 개 이상 가입자에게 제시할 것, ② 최소한 분기별로 1 회 이상 가입자에게 계좌자산의 운용지시를 허용할 것, ③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임. 이 중 ③의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충족하기 위해 가입자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따라서, 확정기여형의 경우 가입자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치를 정부가 해야 한다고 봄.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업자에게 가입자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 선진각국의 금융교육에 관하여 교육을 행하는 주체별로, 즉 정부주도, 연금규제 감독기구, 사회단체, 사용자 등의 행위주체별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이 비교적 활성화된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행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연금교육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1) 호주

- 2005 년 6 월 1 일부터 근로자들의 기업연금 선택이 가능해짐에 따라 Financial Literary Foundation(재무성 산하)에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ASIC)와 Australian Tax Office (ATO)가 기업연금의 기금선택제도를 도입하는데 지원하도록 함
- 정부는 기금선택제도의 도입에 관련된 연금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2 년간 약 2 천만달러를 할당하였음
- 기금선택제의 교육홍보는 금융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의 활동을 포함함
 - 첫째, 기금의 선택을 위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콜센터
 - 둘째, Super Choice Internet site 로서 www.superchoice.com.au 설립
 - 셋째, 고용주와 근로자들을 위한 기업연금 책임 및 권리에 관련된 책자의 발간
 - 넷째, 이에 관련된 광고 등임
- 홍보에 대한 평가는 소비자들과 고용주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홍보는 2006 년의 경우 고용주들을 중심으로 더 강화하고 있음

2)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퇴직과 생애 최초의 주택구입을 위한 근로자 저축을 위하여 자발적인 저축프로그램인 KiwiSave 를 2007 년 4 월부터 도입함
-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요구되고, 근로자들의 기업저축을 KiwiSave 로 전환시켜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저축은 최소한의 기여율, 참여가능성, 계좌 이동성, 수급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함
- KiwiSave 에 신입근로자들은 자동적으로 임금의 4%를 가입하게 되고, 탈퇴할 수 있음. 일단 이 제도에 가입하면 8%까지 기여를 늘릴 수 있음
-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뉴질랜드 정부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들의 금융지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인 캠페인을 지원함
- KiwiSave 는 자발적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이므로 정부는 전국적 금융교육홍보를 개발함

- 정부 교육홍보의 목적은 근로자들에게 단순한 금융 행위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금융교육은 근로자들에게 KiwiSaver 가 그들에게 적절한지, 이것이 그들의 저축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지에 따라 투자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정부는 KiwiSaver 교육홍보가 정부주도로 수행된 금융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효과적으로 통제된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정보와 올바른 금융정보를 근로자들이 보유하도록 하는 것임

3) 미국

- 미국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하여 고용주가 지원하는 교육은 1980년대 대기업 중심으로 제공된 퇴직준비교육이 기초가 됨
- 퇴직준비교육은 확정기여형의 연금에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며, 퇴직준비교육의 목적은 근로자들이 그들의 퇴직 목적을 이해하고 그들이 퇴직생활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이 교육들은 퇴직 후의 소득원 (연금계획, 저축계획, 국민연금, 개인투자, 파트타임근로 등)에 대한 예측, 이 자금들을 지출 수요에 맞추는 법, 그들의 저축행태에 맞추어 퇴직시점을 결정하는 것 등이 포함됨
-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중점은 저축행위와 급여수급의 선택방법에 둠. 일부 프로그램은 비금융적 관점, 즉 건강, 주거, 생활조정, 그리고 다른 금융적 관점으로서 부동산관리 등을 포함함
 -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반응이 과거 어떤 혜택보다 가장 좋았다고 함. 그리고 고용주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훨씬 전에 제공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미국에서 젊은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주지원 교육은 1980년부터 붐을 일기 시작하였음. 이는 확정급여형 연금에서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임
 - 401(k)나 확정기여형 연금이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퇴직을 위한 금융상품의 선택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게됨

- 1995 년에 미국 노동성은 퇴직안정을 위한 개인적 책임의 필요성을 근로자들이 인식하도록하기 위하여 정부연금교육프로그램을 만들
 - 대기업 고용주들의 88%가 어떤 형태로든 금융교육을 제공했고, 이들 가운데 3 분의 2 는 1990 년대 이후 도입했음. 1996 년에 노동성은 Interpretive Bulletin 96-1 을 발행하면서 더 강력히 금융교육을 추진함
- 2000 년의 IT 버블 붕괴 이후의 추가조정, EnRon 및 Worldcom 사건으로 상징되는 자사주투자의 리스크, 즉 많은 가입자가 연금자산의 대부분을 자사주에 투자한 결과 그 대부분을 잃어버린 사태가 발생 등을 계기로 충실한 가입자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됨.
 - 공공정보홍보 프로그램인 Choose to Save 는 안정적 금융 상태를 위하여 소비자들은 오늘 더 저축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Choose to Save 는 퇴직연금 및 기업의료보험에 관련된 비영리기구인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EBRI)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음. EBRI 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훈련, 버스홍보, 컨퍼런스 등을 활용하고 있음
 - 노동성은 책자(the Power to Choose)와 브로슈어(Top ten Ways To Save for Retirement)를 발행하는데 지원함.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하여 공공홍보방송을 함
 - 1997 년부터 뉴스 스페셜로서 The Saving Game 이 방송되고 있는데, 시간대의 가치가 2 천만 달러가 넘고 있음
 - 인터넷으로 Ballpark Estimate Retirement Planning Worksheet (www.choosetosave.org/ballpark) 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퇴직저축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과 100 개의 온라인 금융계산기를 제공함.
 - 이는 신용, 예산, 주택구매 그리고 미래의 금융안정 등에 관련하여 투자자들의 금융계획이슈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위한 펀드와 자료는 민간부문의 기업들, American Savings Education Council (ASEC), EBRI 멤버들에 의하여 제공됨

IV. 선진 사례의 시사점

○ 금융교육에 관련된 선진국 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금융교육에 관련된 OECD 서베이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각국들은 이미 연금 및 어떻게 그들의 저축을 투자할 것인지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음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퇴직저축 정보전달 수단은 브로슈어, 매거진, booklets, 가이드 북, 뉴스레터, 연차보고서, 직접메일, 레터, 공개보고서 등의 인쇄물임. 인쇄물들의 주요 제공자들은 공공 (혹은 준 공공) 부분이었음
 - 예를 들면, 정부 산하 기관, 부처(재경부처나 사회관련 부처), 중앙은행, 규제 혹은 감독기구 등이며, 연금기금기구들 뿐 아니라 소비자들과 근로자들의 협회들도 이러한 책자의 주요 공급자들이었음
 - 거의 모든 책자는 광범위한 투자집단을 위한 것이나 일부는 근로자나 특정 연금기금의 가입자들을 위한 것인 것도 있음

- 둘째, 인쇄물 다음으로 가장 일반적인 정보전달 수단은 웹사이트임. 이러한 웹사이트들의 주제나 공급자들은 책자의 경우와 유사하며, 거의 모든 웹사이트는 거의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함
 - 캐나다의 투자교육기금 (Investment Education Fund in Canada: www.investored.ca)의 경우 다수의 투자계산기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자신의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음
 - 스웨덴의 한 사이트는 기존의 다양한 정보 웹사이트를 그룹화한 것이며, 미래의 스웨덴 퇴직자들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연금제도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음

- 셋째, 강의식 교육코스는 연금에 대한 금융교육을 활용하는데 자주 사용됨. 공급자들은 고용주(미국)나 연금기금기구(네덜란드) 혹은 독립적 퇴직투자정보서비스(호주) 등임

○ 일본의 기업연금연합회는 도입기업의 입장에서 투자교육의 수행과 관련하여 느끼고 있는 어려움을 조사하였음.² 이 조사의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봄

- 첫째, 기존직원 대상의 경우 투자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흥미를 갖게 할 것인가? 심적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자신의 운용상황을 파악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설명회의 강사, 콜센터에 적절한 인재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 신입직원 대상의 경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반년정도) 경과후에 투자교육을 하는 편이 효율적이었음. 계속교육과 관련해서는 가입자의 수준에 맞춘 교육내용이 필요함을 보임
- 둘째, 계속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강의 스타일의 연수교육은 거의 효과가 없었으며, 역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의 지나치게 상세한 연수는 제도기술의 최저한의 습득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이었음
 - 다만, 상세한 연수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등이 필요하므로 사내의 합의(consensus)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셋째, 획일적 프로그램에 대한 집합교육은 비용과 효과의 관점에서 사원과 기업에 있어 유익한 것인가? 자사의 제도와 구조, 종업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조직이 주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
 - 투자교육 효과 증대의 전제로서 라이프플랜과 캐리어플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함
- 넷째, 투자교육의 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운영관리기관에 의뢰하는 비중도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의견 교환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함
- 다섯째, 계속교육이 전원 참가의 설명회에서 실시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음
 - 그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금융기관 등이 투자교육을 행하는 사외연수세미나 등을 기획(수준별 분리 교육)하고, 참가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 사원에게 참가시키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043-840-3464, wonshik@kku.ac.kr)

² 기업연금연구회(일본), 「기업연금제도 시행 상황의 검증 결과」, 2007.7.